

순천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4. 07. 03.

개정 2017. 7. 14.

개정 2019. 11. 1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 라 한다)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명예졸업증서는 이 대학교 학사과정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, 이 대학교 학사과정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.

1.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
2.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그 밖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3조(수여절차) 이 대학교 학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단과대학장의 추천[별지 제1호의 서식]으로, 이 대학교 학사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은 교무처장의 추천[별지 제1호의 서식]으로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예졸업증서[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의 서식]를 수여한다.

제4조(수여시기)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이 대학교 학위 수여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수여자 관리)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 대하여 수여번호 및 수여근거 등을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장[별지 제4호의 서식]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
② <삭제>

제6조(수여자 대우) 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게는 이 대학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.

제7조(수여취소) 명예졸업증서 수여자가 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명예졸업증서 수여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.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7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1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서

수여대상자 인적사항	성 명(한자)		성 별	
	생 년 월 일		연락처(자택)	
	주 소			
	직 업		연락처(핸드폰)	
	직 장 명			
	입학사항	관련없음 또는	년 월 일	대학 학부(과) 입학
	제적사항	관련없음 또는	년 월 일	(제적사유:)
추천사유 :				
관련 증빙자료 :				
위 사람을 이 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				
20 . . .				
추천인 : (인)				
순천대학교 총장 귀하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우리대학교 학적소지자

명학 제 호

명예졸업증서

학 과 :

성 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○○○○○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이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총장 (인)

학위번호 : 순천대 명학 20 제 호

명학 제 호

명예졸업증서

성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○○○○○○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
공헌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총장 (인)

학위번호 : 순천대 명학 20 제 호

